

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12조제8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 1) 및 2)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- 2)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7조제5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·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7조제5항제2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다.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7조제5항제3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라.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·검사를 방해한 경우	법 제17조제5항제4호	시정 명령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